

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건의사항 보고

2025. 4.

글로벌도시정책관

법령개정 및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 부서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법무부 [외국인 체류 지침] 개정 요청 (외국인이민담당관)	<유학생 시간제 취업> □ 현황 ○ TOPIK 등급별 시간제 취업 가능 시간 차등 제한 - 고학년 학사(3~4학년) 및 석·박사는 보다 엄격한 한국어 능력 기준 요구됨 ※ 시간제취업 장시간(25~30시간) 위해서는 (전문)학사(1-2학년) TOPIK 3급 학사(3-4학년), 석박사 TOPIK 4급 필요 □ 건의내용 ○ 시간제 취업 시 TOPIK 제한 완화 - 학사(3-4학년)·석박사 주중 30시간 시간제취업 : 4급 → 3급으로 하향 요청 <유학생 인턴십> □ 현황 ○ 학기 중 인턴십 시간 제한 - 학기 중 근로시간 제한(주중 최대35시간 이하)로 인턴십 참여 어려움 ※ 인턴십 활동 : 보통 주40시간 근무 □ 건의내용 ○ 학기 중 인턴십 허용 (학사3~4학년) - 장기거주 희망 유학생 인턴십 허용 - 시간제 취업시간(주중40시간) 상향 <유학생 창업> □ 현황 ① 창업 활동(영리활동) 불가 - 현재 유학생(D-2)은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, 영리활동 불가로 수익 발생 시 비자 전환 필수 ② 창업 휴학 등 불가 - 유학생 비자는 학업을 이어가야 비자가 유지되므로, 창업을 위한 휴학 등이 불가	법무부

건의 제목 (건의 부서)	건의내용	소관부처
	□ 건의내용 ① 유학생의 창업 활동에 따른 일정기간 영리활동 허용 - 유학생비자(D-2)에서 타 비자로 변경없이 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후 3천만원 이하 영리활동 허용 ② 창업 휴학 허용 - 유학생 정주를 위한 취·창업 장려를 위하여 창업 휴학(1회 1년 이내) 허용	
	<유학생 등 체재비> □ 현황 ○ 유학생(D-2), 어학연수(D-4), 구직(D-10) 체재비 기준 - 비자 연장시 재정능력 입증 금액이 높아 학생, 구직 신분으로 맞추기 어려움 □ 건의내용 ○ 유학생(D-2), 어학연수(D-4), 구직(D-10) 체재비 요건 완화 - 재정능력 입증 금액기준 완화 ※ 체류기간 전체 체재비 일시 증빙 → 체류기간 50% 체재비 일시 증빙	
	<특정활동 직종 제한, 요건> □ 현황 ○ 특정활동(E-7) 직종 제한, 요건 - 90여개 허용업종 지정, 산업·경제 변화에 따른 신속한 반영 어려움. 특히 서울시의 경우 E-7-4 직종이 많지 않아 E-9에서 숙련기능공 전환 어려움 ※ E-7-1 : 67개, E-7-2 : 10개 E-7-3 : 10개, E-7-4 : 3개 직종 (뿌리산업·농림축산업·일반제조·건설업체) □ 건의내용 ○ 특정활동(E-7) 직종 확대, 요건 완화 -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만 (E-7-2) 가능 → 국내 학위 조건 삭제 ※ 이 외에도 산업·경제 변화 반영한 직종 추가 확대	

건의 제목 (건의 부서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국내자격증 취득 후 취업가능 직종 완화> □ 현황 ○ 특정활동(E-7) 외국인 국내자격증 취득 후 취업(활용) 가능한 직종 제한 및 요건 - 국내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제한, 자격증 취득 시에도 취업 및 비자변경 어려움 ※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여도 E-7에 해당 직종없어 근무 불가 □ 건의내용 ○ 외국인이 국내자격증 취득시 취업업종 확대 - 사회복지사 등 외국인에게 허용된 국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, 관련 직종 취업 및 비자 변경 허용 <배우자 취업 관련> □ 현황 ○ 교수(E-1) 배우자(동반가족 F-3)의 취업제한 - 교수로 들어와 가족을 동반해서 왔을 경우 배우자 취업이 제한되어 있어 서울의 고물가에서 생활하기 어렵고, 배우자의 경력단절로 우수한 인재의 한국선택을 주저하는 요소로 작용 ※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 허용대상: E-6(예술홍행), E-7(특정활동) - 그 외 전문인력 배우자 취업 불가 (E-1, E-3, E-4, E-5, E-6-2) □ 건의내용 ○ 동반(F-3) 배우자 등 동반가족의 취업제한 완화 - 우수인력 도입 위해 동반가족(E-1, E-3, E-4, E-5, E-6-2 비자 배우자)의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취업 허용	

건의 제목 (건의 부서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[출입국관리법] 및 [외국인고용법] 개정 요청 (외국인이민담당관)	□ 현황 ○ 유학생(D-2, D-10) : 취업 매칭(연계) 제한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4항 :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. - 「외국인고용법」 제8조 :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, 알선,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→ 취업 위한 기업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부재. 스스로 취업처 찾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포기 사례 多 □ 건의내용 ○ 유학생(D-2, D-10) : 취업 알선(매칭) 허용 - 「출입국관리법」 및 「외국인고용법」 개정 통해 유학생 4학년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허용 ※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학생 대상 적극적인 취업 알선	
3. [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] 개정 요청 (외국인이민담당관)	□ 현황 ○ 유학생(D-2)은 건강보험료 50% 감면, 구직(D-10) 비자 변경 시 감면 적용 없어 부담 - 소득이 없는 유학생(D-2), 구직(D-10)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※ 보건복지부 고시('25.1.1.) 별표2 □ 건의내용 ○ 유학생(D-2) 졸업 후 구직비자(D-10) 전환 후 6개월에 한해 건강보험료 50% 감면 유지	보건복지부
4. [보건복지법] 개정 요청 (외국인이민담당관)	□ 현황 ○ 장애인 등록, 복지카드 발급 제한 - 외국인은 국내 장애인 등록에 제한이 있고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도 제한 존재 ※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(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: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 등 발급 가능 □ 건의내용 ○ 장애인 등록 대상 확대 및 복지 제공 - 외국인 유학생(D-2) 등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하고 복지카드 지급, 편의 제공	

건의 제목 (건의 부서)	건의내용	소관부처
5. [고용허가제] 업종 추가 (외국인이민담당관)	□ 현황 ○ 고용허가(E-9) 직종, 계약체결 제한 ① 돌봄인력 수급불균형 따른 외국인력 도입 필요 ② 호텔 단순인력 도입 시 협력업체의 경우 호텔과 1:1 전속계약만 허용됨에 따라 인력 활용 어려움 ※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공고('24.1.5.) · 호텔업·휴양콘도운영업·호스텔업 및 협력업체(건축물 일반 청소업, 호텔·콘도업체와 1:1전속계약만 허용) □ 건의내용 ○ 고용허가(E-9) 간병인 직종 추가 및 근무유연화 ① 돌봄인력 부족 해결 위한 간병인 직종 추가로 해외인력 도입 ※ 간병인은 국내 별도 자격 없으므로, 일정요건 마련하여 송출국 협의 추진 ② 협력업체가 호텔과 1:1 전속계약이 아닌 다수 업체(3개 이하)와 계약 가능	고용노동부
6. [고용24] 외국어 기능 확대 (외국인이민담당관)	□ 현황 ○ 고용24 외국어 지원기능이 없어 취업정보 확인에 애로사항 □ 건의내용 ○ 사이트 내 외국어 지원, 외국인 고용정보 제공 - 영어 등 외국어로 표출 지원, 취업정보 제공 강화	고용노동부